

#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7.

발의자 : 지상욱 · 오신환 · 유승민  
정태옥 · 박찬우 · 하태경  
정병국 · 김성원 · 유의동  
박명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인구 고령화추세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또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 ·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.

그러나 현행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.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 
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  
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55조의3 신설).

##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3(보훈재가복지서비스) ① 국가보훈처장은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55조의3(보훈재가복지서비스)</p> <p>① 국가보훈처장은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</p>